제 2 9 9 회 임 시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

보고 안 건

연번	유형		안	건	명		제안부서
1	정관변경	서울특별시	공공보건!	의료재단	정관	개정(안) 보	공공 보건 의료재단

공공보건의료재단

1.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보고근거

○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정관)제3항

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5. 16.>

□ 개정내용

- 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에 명시된 조직기구표(별표1) 개정
 - 최근 서울시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에 따른 시의성 높은 조직 운영 필요
 - 부(실)단위 조직에서 본부(실)단위 조직으로 개편(1실·3부 → 1실·4본부)
 - * 기관 운영의 투명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실 신규 설치
- 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에 명시된 정원표(별표2) 개정
 - '21년 예산 증액(시의회, '20.12월)에 따라 "<u>현행 45명에서 49명으로 개정</u>"
 - * (신규업무) 시립병원 서비스디자인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증원(정규직 4명)

(현행) 대표이사, 연구직 36명, 일반직 8명 → (개정) 대표이사, 연구직 39명, 일반직 9명 * 신규증원(4명) : (연구직 3명) 3급(1명), 4급(1명), 5급(1명) / (일반직 1명) 4급(1명)

□ 향후계획(안)

- 시의회(보건복지위원회·제299회 임시회) 정관 개정(안) 보고 : '21. 3월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 : '21. 2~3월
- 보건복지부 허가 및 개정(안) 시행 : '21. 3월

작성자 기획조정실장(직무대행): 이상윤(☎2126-47O3) 팀장 : 이성우(☎4737) 담당 : 강수민(☎4733)

붙임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개정(안) 신 · 구조문 대비표

